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2. 29.(일) 12:00
(지 면) 2024. 12. 30.(월) 조간

고인(故人)의 상조상품 가입여부,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로 확인 가능해진다

- 유족들이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 및 ‘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’ 조회범위 확대
- '25년 말부터는 ‘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’을 통해서도 조회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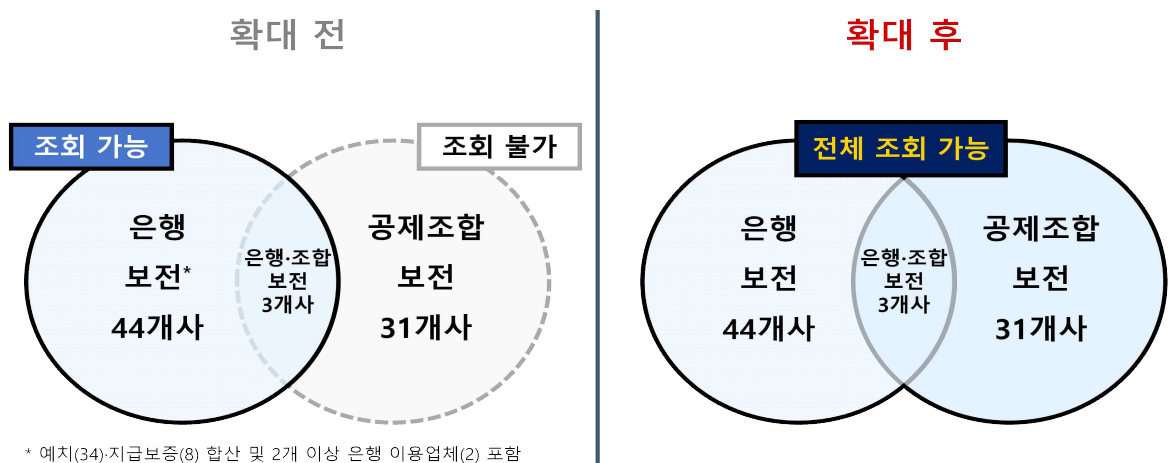
※ 주말 엠바고 주의 : 12월 29일(일요일) 낮 12시부터 보도가능 ※

- 행정안전부 · 공정거래위원회 · 금융감독원은 12월 30일부터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(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)」 및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」를 통해 모든 상조상품(선불식 할부거래 상품) 가입여부에 대해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.
-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는 상속인이 금융, 국세 · 지방세, 국민연금, 토지, 건축물 등 피상속인(사망자)의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.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3년까지 약 150만 명(누적)이 서비스를 이용했다.
- 한편,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재산 등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9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23년까지 약 225만명(누적)이 이용했다.
- 상조상품의 경우, 「할부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조업체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의 50%를 보전하여야 한다. 기존에는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 및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를 통해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을 보전한 상품에 대해 고인의 가입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,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

하는 상조상품은 가입여부 확인이 어려워 유족들이 업체별로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.

- 이번에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 및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 조회범위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상품까지 확대됨에 따라, 선수금 보전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유족들이 고인(故人)의 이름·생년월일·전화번호를 바탕으로 모든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< 조회대상 업체 확대 전후 >



-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는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정부24(gov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, 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」는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를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. 다만 사망 후 1년이 경과하여 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」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 본·지원, 은행, 농·수협단위조합,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.

※ (현행) 금융.세금.토지.건축물.4대보험료 등 19종 → (확대) 20종 (상조가입 포함)

- 앞으로도 정부는 상조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, 국회에서 확정된 「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」 구축 예산 6억 6천만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, 내년 말부터는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도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배문성 (044-200-4430)
		담당자	사무관	나윤경 (naogu@korea.kr)
		담당자	조사관	박희웅 (hwp85@korea.kr)
	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	책임자	과 장	장동수 (044-205-2721)
		담당자	사무관	최경혜 (044-205-2774)
	금융감독원 원스톱서비스팀	책임자	부국장	김우택 (02-3145-8520)
		담당자	선임조사역	문예진 (02-3145-8685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